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 1의4를 통해 규정(안 제18조의3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수입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입신고 제도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대상품목 규정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제18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여 관련 공무원 및 국민의 편의 도모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(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 1의4 신설)

### 가. 개정 이유

- 수입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비해 신고대상 품목수가 적어 제도운영의 효과 저하
-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확대하고,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하여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, 수입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변경
  - \* (현행) 원목, 제재목, 방부목재, 난연목재, 집성재, 합판, 목재펠릿
  - (개정) 원목, 제재목(방부목재, 난연목재, 집성재 포함), 합판, 목재펠릿, 단판, 성형목재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목재펠프
-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불법 벌채목 국내 유입 차단 및 HS코드 명시를 통한 수입신고 효율성 제고, 국산 목재제품의 경쟁력 향상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외 유사제도 운영 국가\*의 경우 목재류 뿐 아니라 목재 가구, 목재 악기, 종이 등 완성품까지 합법벌채 여부를 검증함
- \* 미국, EU, 영국, 호주, 일본, 인도네시아 등
- 신규 대상품목 관련 업·단체 간담회 개최 시 대다수 업체가 대상 품목 확대에 찬성하였으며 향후 완성품에 대한 지속적 확대를 요청함